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42호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91호, 2021.4.1)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기부상열차의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기부상열차의 설비와 차량에 대해서는 「궤도시설의 기술기준」 제3장 도시철도 규정(제117조부터 제196조)과 「궤도차량 기술기준」 도시궤도차량(도시형자기부상 경전철) 규정(제3장부터 제4장)을 준용한다.

나. 「궤도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은 시설로 같은 법에 따른 검사결과 및 그에 필요한 시정조치결과가 적정한 경우 자기부상열차의 설비와 차량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시설안전과
- 전화 : 044-201-4889 / 팩스 : 044-201-5673